

2022년도 ISMS-P 인증심사원 자격 검정 세부안내



1. 응시자 자격 기준

가. 응시요건

- 『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』 제13조 및 별표4에 의거 다음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(①~③)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①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②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③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

- ① "동등학력"이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,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 업무경력을 말함
- 동등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경력은 정보기술,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경력만 인정
- ② 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 이상 두 가지를 모두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,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
- ③ 정보기술, 정보보호, 개인정보보호 경력은 관련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정

정보기술 경력	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통신서비스, 정보통신기기,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 계획·분석·설계·개발·운영·유지보수·컨설팅·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
정보보호 경력	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, 시스템·네트워크 보호, 응용서비스 보호, 계획·분석·설계·개발·운영·유지보수·컨설팅·감리 또는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 또는 관련 법률자문 경력
개인정보보호 경력	공공기관, 기업체,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, 개인정보보호 컨설팅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

- 동일기간에 두 가지 이상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경력만 인정하며, 모든 해당 경력은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인정
-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

나. 경력대체 요건

- 다음의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정보보호 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

(예시) 정보보호 석사 학위 취득자가 개인정보관리사(CPPG) 자격을 취득한 경우,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1년만 경력대체 가능

구 분	경력 인정 요건	인정기간
정보보호 경력	○ “정보보호”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	2년
	○ “정보보호”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○ 정보보안기사 ○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(ISACA)의 정보시스템감사사(CISA) ○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(ISC ²)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(CISSP)	1년
개인정보보호 경력	○ “개인정보보호”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	2년
	○ “개인정보보호”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○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○ 개인정보관리사(CPPG)	1년
정보기술 경력	○ “정보기술” 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 ○ 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○ 정보시스템감리사	2년
	○ “정보기술” 관련 석사 학위 취득자 ○ 정보시스템감리원 ○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	1년

- 경력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는 학위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말함

※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[별표2] 준용

<p>가. 전자 관련 학과: 정보전자, 전자, 전자계산, 전기전자제어, 전자정보, 전자제어, 전기전자, 전자전기 정보, 전자컴퓨터전기제어, 컴퓨터과학, 전기전자정보, 전자컴퓨터, 메카트로닉스, 전자재료, 제어계측, 반도체</p> <p>나. 정보통신 관련 학과: 전기통신설비, 국제정보통신, 방송설비, 방송통신, 이동통신, 전자통신, 컴퓨터네트워크, 통신, 컴퓨터정보기술, 전파통신, 전기전자통신, 전기전자정보통신, 전자정보통신, 전자제어통신, 전자통신, 전파, 전파통신, 정보통신, 컴퓨터통신, 항공통신정보, 전자정보통신반도체, 전기전자전파, 통신컴퓨터, 무선통신</p> <p>다. 정보처리기술 관련 학과: 시스템, 전산, 정보전산, 컴퓨터제어, 컴퓨터응용제어, 컴퓨터응용, 컴퓨터응용설계, 구조시스템, 컴퓨터정보, 멀티미디어, 정보시스템, 전산통계, 정보처리</p> <p>라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자·통신 및 정보처리기술·정보보호 관련 학과로 인정받은 학과</p>
--

2.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접수 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 및 결과발표 일정

- 접수기간 : 2022. 04. 18.(월) 09:00 ~ 04. 22.(금) 18:00 (마감시간 이후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불가)
- 서류 심사기간 : 2022. 04. 25.(월) ~ 05. 20.(금)
- 서류 보완기간 : 2022. 05. 23.(월) ~ 05. 27.(금)
- 응시대상자 확정 발표 : 2022. 06. 03.(금)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isms-p@cpoforum.or.kr),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불가

- ※ 신청자의 귀책사유(이메일 기입 오류, 메일 스팸처리 오류 등)로 인한 발송 오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- ※ 접수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e-mail로 접수확인 안내문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(한국CPO포럼, 02-544-1820)로 접수처리 유무 확인 필수
- ※ 코로나19로 인한 필기전형 고사장 수용 인원 조정 등에 따라, 원서 접수 기간 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○ 제출서류 : ①자격검정신청서, ②신청세부내역서, ③응시자 서약서, ④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⑤관련 증빙서류

-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「신청일자_신청자이름_생년월일.zip」으로 ①~⑤의 서류를 압축하여 이메일 송부 (예: 220418_홍길동_801231.zip)
- 제출 서류의 심사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괄적으로 진행되며,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 보완기간 내에 추가자료를 미제출하여 자격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시험응시 불가

○ 필기시험 수수료 : 없음

○ 수험표 배부 : 2022. 07. 06.(수) 까지 (응시자 대상 별도안내)

○ 접수 유의사항

- ISMS-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는 응시 접수를 제한함
- 1차 필기전형 후 2차 실기전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일정 확인 후 신청
- 신청서류는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합격 취소됨
-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, 위·변조, 기재사항 오기·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책임
- 원서 접수기간 마감 후 접수내용 변경 또는 재접수 등 일체 불가

나. 응시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

◆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 ◆

1. ISMS-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신청서

- 엑셀파일에 표시된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(본인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진 포함)
- 제출된 신청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되므로 임의로 셀 변경, 모양 변경, pdf 변환 등은 불가
- 신청서의 일자 는 반드시 제출일자와 동일하게 작성

2. 신청세부내역서

-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관련 세부내용 작성 후 제출
- 신청세부내역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인증심사원에게 요구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불가

3. 응시자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응시자 유의사항 숙지 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스캔하여 제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사항 필독 후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하고 스캔하여 제출

4. 관련 증빙서류 ※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및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
① 학력 증빙서류(학위 또는 졸업 증명서)

- 수료증 및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, 고등교육법 제35조, 제50조에 따른 학위증명서만 인정
-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주되어 10년 이상의 경력자료 필요
- 관련 학력으로 경력대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학력의 학위증명서 제출
예) 석사 전공이 정보보호학이고 최종 학력이 영문학 박사인 경우 석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경력대체요건 1년이 인정되며 박사학위증명서는 제출하더라도 관련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음
※ 석사 또는 박사 학위자인 경우, 경력 인정 기준 확인을 위하여 전체 학력에 대한 학위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

② 경력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상세 재직증명서, 근무확인서, 기술실적 증명서 등)

- 경력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원칙(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)으로 하며,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 기간만 인정됨
- 원칙적으로 첨부된 경력증명서(전 직장) 또는 상세 재직증명서(현 직장)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(또는 회사)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
- 단, 첨부된 서식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담당업무, 기간, 부서이동 내역 등이 상세히 명시된 개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인정됨
- 경력 증빙서류는 ISMS-P 인증심사원의 기본요건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, 정보기술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, 반드시 본인의 담당업무와 해당하는 기간, 부서이동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함
- 이전 직장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, 첨부파일 중 "근무확인서" 양식을 작성 후 당시 임원 또는 동료 등(확인 가능한 인원)에게 서명을 받고, 4대보험 납부증명서(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증명서) 함께 제출
- 프리랜서 활동을 한 경우 관련 기술실적증명서(필요시 첨부양식 참조하여 작성)를 작성하여 해당기관(또는 회사)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
- 본인의 담당업무, 프로젝트 수행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계약서 등)는 인정
- 다만, 근무처 사정에 따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(KOSA)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과 같이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
- 자격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해 증빙하여야 하며 경력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

③ 자격 증빙서류

- 신청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하며, 합격안내문 등으로 대체 불가

5. 기타

- ① 제출서류 또는 서류내 필수항목(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자필서명 등)이 누락된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안내 없이 반려됨
- ② 수험원서 오기재 및 서류제출 실수로 인한 착오가 발생했을 경우 자격검정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음

3. 필기전형 및 합격자 선정

가. 필기전형 및 합격자 선정 방법

- 시험일시 : 2022. 07. 16.(토) 14:00 ~ 16:00 (입실시간 12:00 ~ 13:30)
 - 응시자는 신분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를 위하여 13:30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(13:30 이후 입실 불가) (※ 입실 장소(교실 등)는 시험장소에 도착 후 확인 가능)
 - 응시자의 안전 보장 및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하여 자가용 출입 제한
 - 시험 당일 코로나19 확진자, 37.5°C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의 경우, 질병 관리청의 최신 방역 지침에 따라 응시가능 여부 개별 공지 예정
- 필기시험 분야 및 내용 (※ 세부 출제 기준은 붙임 참조)

구 분	내 용
출제분야	ISMS-P 인증제도, ISMS-P 인증기준,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,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, 개인정보 생명주기
문제 유형	객관식 5지 선다(단순질의, 복합응용, 상황판단)
문항 수	50문제
시험 시간	120분

- 시험장소 : 서울 소재 (응시자 대상 별도안내)
- 필기전형 시 준비물
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만 인정
 - 수험표
 - 답안지 작성용 필기도구(컴퓨터용 싸인펜 등 지워지지 않는 검정색 필기구)
※ 기타 필기구,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함
- 필기전형 합격 기준 : 60% 이상 득점자
-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: 2022. 08. 12.(금), 개별통지
- 필기전형의 결과의 효력 : 해당연도(2022년도)와 다음 해(2023년도)에만 유효
- ※ 2021년 이전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, 필기전형에 재응시 하여야 함

나. 필기전형 응시자 유의사항

◆ 필기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 ◆

1. 필기전형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
 - 대장 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
 - 단, 설사/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한 경우에는 재입실 불가
2.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비치되어있지 않으므로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여 시험시간을 관리하여야 하며,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등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 불가
 -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으로,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 -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]를 일체 사용할 수 없음
3. 신분증 미지참자 또는 부적합 신분증(사원증 등) 제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4. 응시자의 안전과 교통체증에 따른 입실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응시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험장 내 자가용 출입을 금함

4. 실기전형(실무교육 및 평가)

- 대상 : 2022년 필기전형 합격자
- 실무교육 일정 : 9월~10월 중 5일간 (월요일 ~ 금요일)
- 실기평가 일정 : 10월 중 토요일 (입실시간 12:30 ~ 13:30)
 - ※ 실무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평가시험 응시
- 실무교육 및 평가장소 : 서울 소재
 - ※ 실무교육 세부일정 및 평가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안내
- 전형방법 : 실제 인증심사에 대비한 실무교육 및 심사능력 평가
- 기타사항 : 교통비(주차비), 식비, 숙박비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

5. 최종 합격자 발표

- 최종 합격자 발표 : 11월 예정 (개별 통지)
- 합격기준
 - 서류전형 통과자로서 필기전형 및 실기전형 합격요건을 충족하는 자
 - 최종 심사 결과 서류 부적합 및 허위 판명 시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 - 최종 합격 판정에 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 거부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6. 부정행위 관련사항

- 부정행위 발생 시 응시자의 자격검정을 무효화하고 그 처분이 이행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자격시험 응시 불가
 - 자격검정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
 - 쪽지, 수험표 등에 문제 또는 정답을 옮겨 적는 행위를 한 경우
 - 응시자가 외부에 시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
 - 본인이 아닌 자가 시험 응시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
 -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
 - 시험시간 중, 전자기기 또는 통신기기를 사용하거나 벨소리 등이 작동된 경우
 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경우
 -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
 - 인가되지 않은 휴대물을 보는 행위
 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
 - 감독관의 본인확인 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
 - 시험 또는 실무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(동영상, 사진 등)하는 경우
 -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

7. 기타

- "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"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문제 및 정답은 비공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히 외우고 합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이해력과 응용력을 검증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'22년도 ISMS-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 업무 수탁기관
 - 수탁기관 : 한국CPO포럼
 - 수탁기간 : 2022. 04. 18. ~ 12. 31. 까지
- 접수 및 시험운영 관련 문의
 - 한국CPO포럼 (isms-p@cpoforum.or.kr, 02-544-1820)

[붙임] 출제분야

1. 출제범위

【 출제범위 및 상세내용 】

No	출제범위	상세내용	비고
1	ISMS-P 인증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SMS-P 인증제도 개요 ○ 인증기준 요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2개 인증기준 및 세부점검항목 - ISMS-P 인증기준 안내서에 포함된 주요 확인 사항, 결함사례, 증적문서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제유형 : 객관식 5지선다 ※ 단순질의, 복합응용, 상황판단 • 문항수 : 50문항 • 시험시간 : 2시간 • 관련 법규의 범위 : 자격검정 시 인용·제시되는 법·시행령·고시 등 관련법규는 응시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공고일 기준 시행된 법령으로 출제
2	(개인)정보보호 관련 법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개인)정보보호 관련 법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 - 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- 기반보호법 및 하위규정 - 신용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- 위치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 - 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규정 - 공공분야 관련 법률 및 규정 - 정보보호산업법 및 하위규정 - 전자서명법 및 하위규정 	
3	(개인)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증기준 관련 (개인)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○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사례 ○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	
4	개인정보 생명주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인정보보호 범위 및 적용대상 ○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, 파기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등 	

※ ISMS-P 인증기준은 "<http://isms-p.kisa.or.kr> > HOME > ISMS-P > 자료실" 참고(최신 법령 반영하여 개정된 인증기준안내서 및 세부점검항목은 4월 중 공지 예정)

2. 문제유형

No	출제유형	설명
1	단순질의형	인증제도, 인증기준, 보안기술,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도 측정
2	복합응용형	인증제도, 인증기준, 보안기술, 관련 법률을 두 개 이상 연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응용능력 측정
3	상황판단형	상황에 따라 인증제도, 인증기준, 보안기술,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측정

3. 정보보호 관련 법규 범위 상세 (www.law.go.kr 참고)

※ 자격검정시 인용·제시되는 법·시행령·고시 등 관련 법규는 검정 응시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공고일(2022.4.8)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령으로 출제(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)

구분	내용
정보통신망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법률 제18201호)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2274호)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)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)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)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27호)
개인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인정보보호법(법률 제16930호)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2528호)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3호)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-2호)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1호)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-13호)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-4호)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-7호)
기반보호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통신기반 보호법(법률 제17357호)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517호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3호)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·평가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103호)
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17344호)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1221호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·성능에 관한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7호)
신용정보보호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법률 제17799호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2274호) 신용정보업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21-57호)
위치정보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법률 제16954호)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1453호)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(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8-10호)
전자금융거래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금융거래법(법률 제17354호)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2449호) 전자금융감독규정(금융위원회고시 제2018-36호)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(금융감독원세칙 제9999호)
공공분야 관련 법률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정부법(법률 제17799호) 전자정부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2196호)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3호)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(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5호)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795호) 보안업무규정(대통령령 제31354호)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(대통령훈령 제420호)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(행정안전부훈령 제186호)
정보보호산업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(법률 제18200호)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32528호)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91호)
전자서명법 및 하위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자서명법(법률 제17354호) 전자서명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31222호)